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312
------	------

2023.12.19.
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3일, 이민옥 의원(찬성자 13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】

-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12.19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이민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·지원 해오고 있음.

- 그러나 강소기업의 선정 시에만 선정 기준, 선정 방법, 지원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을 뿐, 선정 취소 시에는 그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.
- 또한 이는 강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취업 또는 사업 연계 등을 도모하는 청년 및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소기업 선정 기본 취지에 반하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.
- 이에 따라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유 및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, 강소기업 선정의 기본 취지를 더욱 강화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강소기업의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실과 사유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(안 제14조 제3항)

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강소기업 선정 취소시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강소기업에 관심을 가진 취업 희망자와 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됨.

나. 강소기업 현황 및 조문 검토(안 제14조제3항)

- 서울시는 구인·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서울형 강소기업¹⁾(이하 ‘강소기업’) 육성·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.
-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‘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’ 2만여 개를 대상으로 ▶일자리창출 성과, ▶기업우수성, ▶고용안정성 노력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있음.

< 서울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 >

(’23.6월말 기준)

구 분	하이서울 브랜드	청년친화 강소기업	가족친화 인증기업	이노비즈 (기술혁신기업)	메인비즈 (경영혁신기업)	벤처기업
인증기관	서울시 (SBA)	고용노동부	여성가족부	중소벤처 기업부	중소벤처 기업부	중소벤처 기업부
기업수(개) (21,266)	1,004	391	1,539	3,779	4,336	10,217

- 서울시는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·선정방법·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서면심사, 현장실사, 관계자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, 올해(2023년) 새롭게 선정된 강소기업은 55개임(참고자료).

1) 규모는 작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선정한 기업

<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절차 >



- 그리고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무환경개선금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, 2016년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근무환경 개선금 173억 9,300만원(3,204명),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33억 2,600만원(233명)이 지원되었음(참고자료2).

< 연도별 지원 현황 >

(’22.12월말 기준, 단위 : 명, 백만원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합계
근무환경 개선금	인원	37	188	273	415	779	925	3,204
	금액	70	937	1,618	2,615	4,212	4,908	17,393
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	인원	-	-	2	28	64	80	233
	금액	-	-	4	348	940	1,085	3,326

※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지원(’16~’17) 사업은 ’18년부터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사업으로 전환, ’18년부터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 사업 시행

- 또한, 강소기업에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최대기한(6년)이 만료되면 협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, ▶기업 의무사항 미이행, ▶노동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바, 사업 시행 후 현재 까지 총 399개의 기업이 선정 취소되었음.

<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 해지 조치 된 주요 사유별 현황 >

('23. 10월말 기준, 단위: 개)

인증취소 조치연도	합계	세부 사유								
		의무사항 미이행	점검, 재인증 미이행	협약 기한 (6년) 만료	타시도 이전	재인증 평가 탈락	협약 유지 미희망	합병, 파산, 폐업	노동 법령 위반	기 타
합 계	399	89	124	48	27	27	51	12	15	6
2017	1	-	-	-	-	-	1	-	-	-
2018	24	1	-	-	3	-	20	-	-	-
2020	32	-	-	-	9	-	20	3	-	-
2021	102	70	7	-	12	-	8	4	-	1
2022	129	12	48	48	1	13	1	1	3	2
2023	111	6	69		2	14	1	4	12	3

※ 재인증미이행은 재인증 여부에 대한 의사 표시와 서류제출이 모두 안 된 기업을 의미함.

-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재인증평가에서 점수가 70점에 미달한 기업, 최근 5년간 노동법령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기업, 그 외 기업 소재지나 요건 변경으로 인한 부적합 기업의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됨.

< 인증 유지 및 취소 기준 >

[인증 유지]	[인증 취소]
<p>재인증평가 점수 70점 이상 획득 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시근로자 증가 실적(20점) · 중소기업 역량(매출액 등)(15점) · 고용안정성 및 적정임금(30점) · 복지,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(35점) · 서울시 사업 참여 실적(최대 20점 가점) · 노동법령위반 신고(최대 20점 감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인증평가 점수 70점 미달 기업 - 최근 5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동법령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기업 - 그 외 서울시 거주 청년 신규 정규직 미채용, 타시도 이전, 합병·폐업 등 부적합 기업

- 이와 같이 그동안 적지 않은 기업이 강소기업에서 선정 취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소기업 선정과 달리 취소 시에는 그 사유를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되지 않았음.

- 따라서 선정시와 동일하게 20일간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취소사유를 게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등 개정조례안은, 강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취업이나 사업 연계를 도모하는 시민과 기업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음.
- 다만 노동법령 위반 등 기업의 평판을 저해하는 취소사유가 공개 될 경우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민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1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발 의 자: 이민옥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김기덕, 김인제,
김지향, 박강산, 박승진,
봉양순, 송도호, 이상훈,
이원형, 임만균, 최민규,
최재란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 지원해오고 있음.
- 그러나 강소기업의 선정 시에만 선정기준, 선정 방법, 지원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을 뿐, 선정 취소 시에는 그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.
- 또한 이는 강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취업 또는 사업 연계 등을 도모하는 청년 및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소기업 선정 기본 취지에 반하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.
- 이에 따라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유 및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, 강소기업 선정의 기본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강소기업의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사실과 사유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(안 제14조 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4조 (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시장은 선정 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

문서번호

2023101300000012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이민욱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3.

회신일 : 2023.10.13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(강소기업 선정 취소 등)제3항을 신설하여 강소기업 선정 취소에 대하여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취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박지영
	☎ 02-2180-7952
	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